

노점상에게 집회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최근에 집회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몇 가지 편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각과 판단이 우리의 투쟁을 심각하게 왜곡 시키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집회가 가지고 있는 엄중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보다 힘찬 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투쟁은 노점상들의 힘찬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일 때 그리고 셋이 모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거리에서 소외 받는 노점상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요구조건을 드높이 외칠 때 의식적인 각성은 물론이려니와 평소 쌓인 울분을 터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리는 일반회원들을 조직 할 때 무엇보다도 대규모 집회와 행사에 한번 동원했을 효과는 열 번의 교육보다도 높은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집회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결의를 높여내게 되는 것이며 집회 때의 발언 선동 투쟁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큰 효

과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면담과 교섭이 투쟁 보다 우위다?

이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 투쟁을 통하지 않고 면담과 교섭으로 성과를 얻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물론 실용적으로는 집회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생존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현상적으로는 성과일 수 있으나 이러한 성과의 뒤에는 단체의 물리력과 조직력 그리고 구체화된 투쟁이 전제가 되었기에 교섭과 면담을 성공으로 끝내는 경우다. 특히 투쟁을 단순히 생존권을 찾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협소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노점자리 인정을 넘어서 의식적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면담과 교섭이 투쟁의 우위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셋째 집회는 선전선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집회는 기본적으로 선전과 선동의 장이다.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점상들이 왜 모여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떻게 모이게 된 것인지를 알려내고 선전과 선동을 하는 장소이다.

하기에 우리는 집회에서 선전물 및 대자보 플랭카드 등 다양한 선전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아울러 구호, 발언, 선전물, 시위 등의 온갖 형태를 통해 집회 참가자는 자신이 왜 이 집회에 나와 있는지를 대중

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기에 집회는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넷째 집회는 참가자들의 주장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멀리에서 올라온 울산과 진주, 부산 등지의 동지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동지애를 확인하는 장소 그곳이 곧 집회 장소인 것이다. “우리 부산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는 지금 우리 지역은 단속을 투쟁으로 승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에 있어 참가자들간의 대화는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지역의 회원들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고의 동지애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장사가 잘 되느니 하는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연시들의 발언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 선전물이나 집회 분위기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옆 사람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식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집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소할 만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함께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한편 같은 노점상이라 해도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그에 대응하여 투쟁하는 방향 등 참가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 할 것이다. 집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

한 의견들이 민주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장이다. 기본적으로 발언이나 유인물, 혹은 참가자들간의 대화를 통해 이런 서로의 주장에 대한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집회는 가진 자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종로의 거리에서 힘겹게 장사를 하는 우리, 가끔 단속반과의 부딪침을 통하여 좌절에 빠지게 하고, 거리의 매연과 더위, 그리고 추위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의 집회는 항상 가진자들을 향하게 마련이다. 해당시기 핵심적인 정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집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노점상이 있고 함께 연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그들의 지배질서를 바꿔내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집회는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며 가진 자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한편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을 자행하지만 여성들을 앞세워 저지선을 막는다든가, 혹은 취루탄을 쓰지 않는다는 방법을 여론을 통해 조장을 하면서 탄압을 해오고 있다.

무력적인 투쟁 즉 강고한 투쟁은 우리의 폭력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의도되고, 제도화된 폭력에 대항하는 우리의 정당방위인 것이다. 집회 즉 투쟁하는 장소는 우리의 힘을 최대한 보여주는 자리이다.

일반적인 집회나 투쟁을 넘어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점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조건이 나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방식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단속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투쟁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전술이 다양해져야 한다.

과거 일반 시민들은 노점상의 투쟁을 도시빈민의 생존권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측면이 커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조건에 부합되거나 불이익이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 노점상에 대한 지지는 크게 약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교통, 환경등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익집단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여전히 노점상의 단결된 힘에 기초한 강력한 투쟁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공공성을 무시해서는 더욱이 안될 것이다.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는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는 일방적 주장과 집회를 넘어서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과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불안정 고용의 확대를 통한 실업문제 확산, 농촌파탄과 사회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단속에 대응하는 합법화 요구를 넘어서 잘못된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노점상을 대책도 없이 단속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밖에 고용, 유통 및 잘못된 사회구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신규노점상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노점상의 생존권과 더 나아가 합법화가 기존의 노점상만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설득력을 잃게 될것이고 기득권 투쟁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신규발생 노점상의 문제가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요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기득권 차원의 합법화가 아니라 노점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시의 일자리 문제(불안정, 고용의 문제), 농촌파탄의 문제, 구멍가게까지 잠식하는 독점재벌 중심의 유통체계 등이 사회의 잘못된 정치, 사회, 경제구조를 개혁하자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넷째, 자율질서 사업을 통해 통행불편, 교통장애 등 시민불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통해 사회적 명분과 설

득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노점상의 긍정적인 기능을 더욱 살려 나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불안, 교통, 환경, 주택, 교육 등 전국민이 함께 해
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와 지역에 처해진 문제를 노점상이 앞장서서
지역의 민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고쳐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하에 집시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집회와 시위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기본으로서 소수의 소외
받는 민중들의 의사표현이나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여론화시키는데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 오히려 이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궁
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로 규정을 하고 있다. 때문에 집회는 민주주의의를 확대 발전시키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축시키거나 가로막아서는 안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에 따라 집회신고가
있으면 집회의 규모에 대하여 과악하고 집시법상 제한이나 금지통고
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이유를 들어서 기본권을 저해하고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를 몇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집회신고사항에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집시법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사항은 목적, 일시 등 대략 23가지에 달한다.

이 23가지를 적용하며 실질적으로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재
량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이 되어 신고제를 인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론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으나, 상급경
찰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제절차로서 실효성이 없다. 일단 금지
통고한 집회를 상급경찰관서가 특별한 정치적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밖에 집시법의 신고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신고서 기재사항을

통해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의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 고 집회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집회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경우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시간,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일탈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집시법을 해석하는 경우다.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위와 같은 조항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리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전노련에도 일정정도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거 폭력행위를 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집회를 불허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성이 높아지여 실질적으로는 집회·시위의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될 수 있는 점이다.

세번째. 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문제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선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집회장소 100미터안에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사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통상 집회는 그

목적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해고자들은 삼성그룹의 본사가 있는 건물의 주변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이곳 삼성생명본사 사옥 21층에 유치하거나 97년 삼성생명, 삼성 본관 빌딩 옆의 태평로 빌딩에 싱가포르대사관과 싱가포르 무역진흥 사무소를 입주시켜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자사 소유인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종각 앞 삼성타워에 지난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곳은 종묘공원에서 종각까지 행진을 하거나 삼성타워 앞은 200여평의 공간의 경우 각종 시위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이제는 종로서적 옆골목인 좁은 도로인 관철동 짚음의 거리를 경유 할 수밖에 없다.

네번째.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지난 9월 전노련에서도 청계천에 집회신고를 제출을 하였으나 불허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집회·시위의 시간과 방법, 당해 도로의 교통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한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제12조 제1항 자체가 경찰당국에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서울시내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주요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참고



168
해방수레를 끌며 6호 _ 기획

다섯째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문제점은 첫째, 두 집회가 서로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당국은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민중운동진영의 집회를 막고자 위장집회를 장기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장소였던 강남일대 주요도로 사전 선점에 경찰이 개입하여 미리 집회를 신고를 한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경찰이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명동성당 또는 대학로 종묘공원 등 실질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령단체들을 동원하여 미리 집회를 선점하여 주요한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5.24)

이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운영이 문제인데 경찰당국은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예정일이 되기도 전에 제한통고도 아닌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결국 이는 경찰당국이 거주자들에게 집회개최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요청서를 받아 제한통고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식으로 법운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건설운동노조는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집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작은 인원의 캠페인성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했으나,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면서 금지 통고를 한바 있다.

여덟째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촬영 행위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1. 6. 12. 민주노총의 대학로 집회에서 사진기자로 가장하고 연단 위로 올라가려던 사복경찰이 시위대에 발각된 경우이다. 집회장소에 사복경찰관이 출입하는 것은 집시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통보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리고 집회·시위가 있을 때 경찰당국의 대학생 등으로 가장하고 집회장소에 들어와 촬영하는 경우, 주요 행진로 근처 건물이나 전경대오 뒤에서 평화로운 집회과정을 촬영하는 행위 모두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 영상채증은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 하므로 영상채증을 막으려다 폭력이 일어나는 등 시위현장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집회장소에 사복을 입고 몰래 들어와 촬영하는 경우는 출입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집회 장소 밖에서 평화로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러한 촬영이 자유로운 참가와 표현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대부분 무분별한 비디오·사진촬영이 불필요하게 시위대를 자극해 평화적인 집회·시위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집회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해산을 하는 과정도 시위의 개념에 포함하여 올초 대우자동차 폭력 사태의 경우 노조사무실로 가려고 인도를 따라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을 막아 폭력을 휘둘렀으며 전노련의 경우 지난 9월 종로지역의 시청 항의 방문 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사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 정부와 검찰, 경찰은 집회를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 중에 있다. 집회 참가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대문안 도심에서는 집회 참가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집시법을 규제 강화 쪽으로 개악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

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론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우리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위와 같이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여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마치며

비록 패배할지라도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패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질적으로 발전된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 두번의 패배로 투쟁의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지는 싸움이라도 투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투쟁은 우리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갖은 자들과 정권의 본질을 폭로해 내기 때문이다.

패배할지라도 마침내 승리를 위하여...

투쟁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에 이글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다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이글은 학생단체 글과 2001년 7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실시된 표현의 자유 공청회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를 참고하였다.



노점상의 주위를 둘러싼 각부문의 현황



통일

도시빈민 통일운동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 _ 권오창

이 땅의 도시빈민은 누구인가?

한 포기의 풀잎도 그 생장의 연유가 있거늘 한 민족이 살아나가는
데 오늘에 처한 우리 도시빈민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그 뼈
저린 한의 역사를 어찌 외면 할 수가 있으리오....

우리 민족의 근 현대사는 바로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이고 그 침
략을 물리치고 자주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몸부림과 죽음의 역사이기
도 하다. 그 죽어 가는 과정에서 죽지 못해 살아야만 하는 우리 민중의
삶의 그 진하다 진한 피눈물을 심기며 살아가는 오욕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민중, 특히 도시빈민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우리 민중은 일제 시대 때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 놈들의 식민지 침
략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징병, 징용, 성 노예로 전쟁터에 끌려가
200만이 희생되었고 그 전쟁에 억압 착취당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
려야만 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 제국주의가 한반도 남단을
점령하여 민족을 분단하고 동포를 이간질 시켜 전쟁 책임과 경제침
탈을 자행하였으며 당시 우리 민족 구성원의 6분의 1인 500만명이 그
목숨을 희생해야만 했다.

6. 25전쟁은 바로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생활의 터전을 파괴함으
로써 도시빈민을 양산하게 되는 그 단초를 열어 놓았다. 그리고 우리
민족 경제를 미제의 경제 체제로 편입시켜 영구적인 식민지화 정책으
로 자립적 경제의 바탕을 허물어뜨리고 한반도를 대소 전진기지화하
고 가혹한 전쟁책동과 경제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반세기 동안 착
취 억압해온 결과 오늘 우리 민중의 도시빈민은 더 확대 양상 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제가 일제로부터 탈취한 적산재산 (일본 놈들이 남
기고 간 재산) 을 귀속 재산이라 하여 대부분 미군정이 독차지하여 이
것을 식민지 착취에 용이하겠금 매판재벌을 키워냈으며 이 몇 안되
는 매판재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경제 명맥을 틀어쥐고 우리 민중
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제1차적으로 농촌을
먼저 파괴하고 그리고 제2단계로 수출 제일주의 산업화 과정을 통하
여 공업화, 산업화 과정을 밟으면서 신식민지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

로써 이 땅의 계급 사회를 합리화 시켜 민중을 국제 금융자본의 임금 노예로 전락 시킴으로써 우리 도시빈민은 그 사회 계층화 과정을 통하여 착취 과정이 제도화 고착화되어 날이 갈수록 생활이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이다. 우리 도시 빈민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 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착취, 억압 한 결과로써 생겨난 사회적 산물이다.

우 리 도 시 빈 민 은 왜 가 난 한 가 ?

오늘 도시빈민이 못사는 것은 우리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일할 래야 일할 데가 없고 식민지 경제 착취제도와 산업대열에서 도태되어 갈곳이 없어 차마 자식들하고 죽을 수가 없어 범망을 어겨 가면서 까지라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삶의 수단을 찾은 것이 바로 노점상이다. 누가 국가로부터 질시를 받아가며 시민들로부터 천대를 받아가며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읊켜잡고 노점상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도시빈민의 문제는 바로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운명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역사적 특수성에서 배태된 하나의 사회 현실이고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미제가 이 땅에 식민지 통치 착취 과정에서 빚어진 필연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미제는 이 땅에 1945년 9월 8일 군화 발을 딛고 점령군으로써 인천 항을 상륙하면서부터 해방군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의욕을 가지고 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처음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알사탕을 물려서 입을 다물게 하고 소위 3백 산업이라 하여 밀가루, 설탕, 목화, 이 세가지 품목을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지 못하여 처지 곤란한 것을 원조라는 미명하에 우리 민족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다. 그것이 바로 미 잉여 농산물 도입법(9. 1 480호)이라 하여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경제권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고 그 돈은 바로 이 땅의 경제를 틀어쥐는 5대 재벌을 키워 내게 되었다.

이들 재벌에게는 귀속재산을 값싸게 불하시켜 주고 수입 잉여 농산물을 독점케 하고 금융혜택을 주고 세금 감면을 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침탈 앞잡이 도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매판 재벌을 키워 낸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경제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대(정주영), 럭키(구인회), 선경(최종현), 삼성(이병철) 대림등 유수한 기업들이다. 미제는 이미 잉여 농산물을 도입도록 하여 이 땅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 하겠금 만들었다.싼 잉여 농산물을 농촌에 풀어 먹이니 농사를 지어 봐야 농사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빚만 지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농산물 가격이 협상가격(錫狀假格)으로 이어져서 농산물 가격은 턱없이 싸고 공산물 가격은 벼락같이 높아서 농산물 가격과 공산품 가격이 격차가 심하여 농민들은 더욱 빚을 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교우위론이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중화학 공업육성과 수출 제일주의 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농촌은 급 속도로 파괴하여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담보짐을 싸가지고 도 주하여 도시로 몰려오게 된 것이다.

도시로 몰려온 농민들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 어 도시 생활에서 온갖 밑바닥 생활을 하여 구로 공단, 마산 수출공단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비둘기 집에 칼잠 자며 라면을 먹으며 배 를 채우고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수출산업 전사라는 이름으로 매판 재벌들의 임금노예가 되어 죽을 줄도 모르고 집이 라도 한 칸 장만해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빼 빠지게 일했건만 남은 것 은 가난뿐이다. 가난이 가난을 대 물림하고 이래서 도시빈민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 인생으로써 계층을 이루고 그나마 생산대열에서 실직 이 되면 궁여지책으로 찾는 것이 손쉬운 길거리 노점상이다. 구청 단 속반에 깡패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도 살길이 없어 몸에 휘 발유를 뿌리고 자살하고 단속반과 싸우다가 병신이 되곤한다.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생활이 더욱 가속화되어 정리해고요 구조조정이요 하는 바람에 직장인이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에 쫓겨나게 되니 도시빈민은 더욱 가속화되고 가족들하고 굽어 죽지 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온갖 3D 산업을 찾아 나서야 하고 그래도 손쉬운 것이 거리 노점상이어서 노점상은 IMF 이후 더욱

가속도로 늘어가게 되었다.

도시 빈민은 그 생활 조건에서 가장 문제가 주택문제이다. 자나깨 나 내 집이 없어 전세방과 월세방으로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고 도시 개발과 재개발에 밀려 그나마 셋방살이도 유지하지 못하여 철거반원에 쫓겨나서 변두리로, 변두리로 밀려나 살 보금자리조차 빼앗기게 함으로써 도시 무주택자로써 철거민의 서러움을 겪어야 한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집이 있건만 하물며 내 땅에서 내 국민이 살아가는 사람이 집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미 제국 주의와 그 앞잡이 사표정권의 비인간적인 식민지 착취 제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시빈민이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 바로 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노점상과 무주택 철거민들이다.



미 제국주의와 그 암잡이 파쑈정권의 식민지 착취 체계

제국주의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후진국을 착취 억압하여 자본의 이익을 갈취해 가는데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산업 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되어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 금융자본이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을 해외에 주둔시키고 식민지 민족 해방을 억압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한다.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산 복합체 산업을 장려하여 군사 무기를 생산하여 해외에 전쟁을 일으켜 전쟁 무기를 소모함으로써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미군이 수도 한복판 용산 미군기지에 백 만평을 차지하여 내정간섭을 하고 전국 95개 군사기지에 약 8 천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그것도 우리 정부로부터 적 점 주둔비와 간접 주둔비를 1년에 합하여 약 4조원어치를 받으면서 그 것도 모자라서 금년에 32%를 올려 달라고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금년에 미제의 무기를 13조원 어치를 팔아 주기를 강요하고 있고 2005 년까지 35조원 어치의 무기를 우리가 사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일년에 국방예산이 매년 불어나서 금년 예산에도 15조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의해서 살 상무기를 도입하는데 소비하니 우리 민중이 아무리 빠 빠지게 일해 봐야 항상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제 금융자본(IMF)에

의한 착취는 또 어떠한가? IMF 사태 이후에 미제의 금융자본은 수많은 유수한 문전옥답과 같은 국영기업과 사기업들을 혈값으로 기업사냥을 해 나갔다. 남아 있는 기업조차도 은행, 자동차, 철강, 전기, 통신 할 것 없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식을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모조리 착취해 가고 있다. WTO, 우루과이라운드, OECD요 하면서 다자간 협약을 통해 무역수지 역로를 통하여 그 이득금을 착취해 가고로 열티로요, 지적 소유권이요 하면서 모든 상품에 이익금을 붙여 빼앗아 간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화폐 금융의 환율조작을 통하여 이득을 취해감으로써 우리 민중이 땀흘려 창출한 부의 3분의 2를 해외로 유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민중이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살길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매판 자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대다수 우리 민중이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 도시 빈민 생활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원료, 원천지로 상품판매지로 자본 투하지로 활용하여 경제 착취를 지속함으로써 오늘 미국이 우리 민중에게 들 써운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도시빈민은 실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이미 70%에 이르렀으며 생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족이 동반 자살하고 실직을 비관하여 죽어 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IMF 사태 이후에는 미국과 한미투자협정을 맺고 일본과 한일 투자협정을 맺어 공공연한 착취제도를 통하여 뭉태기로 자본 이득금을 착취하는 등

경제침탈의 참담함은 늘어만 가고 있다.

도시빈민의 궁극적 삶의 길은 오직 통일뿐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로 파쇼 어용정권을 앞세워 매판 재벌들을 돈주머니로 활용하여 계속 전쟁책동과 경제 침탈을 감행함으로써 그 착취는 끝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갈아 치운다해도 그 정권은 본질적으로 미제의 앞잡이 정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민간 정부로써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 섰어 도 우리 도시빈민이나 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직과 가난, 생활의 고통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근원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김대중 정권이 또한 그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대중 정권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내세우고 북한에 대해서 햅볕정책 운운하면서 그 무엇인가 민중을 살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이요, 정리해고요 하면서

미제의 금융자본의 이윤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민중을 가혹하게 길거리로 내몰아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간접 학살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자기의 파쇼권력을 유지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한총련, 범민련을 이적 규정으로 몰고 집시법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그 자체가 다 기본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 시켜주는 수단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오늘의 사회적 현실에서 우리 도시빈민의 운동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존권만을 쟁취하면 문제는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위협을 받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정권의 파쇼적 행태에 대해서 타격을 줌은 물론이고 그 뒤에 숨어서 배후조정을 하는 미제를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몰아 낼 때만이 우리는 식민지 착취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 권리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의 IMF 자금의 도입으로 우리 경제를 희생하고 거기에 우리 민중의 삶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역대 정권들은 하나같이 이 IMF자금에 경제 명맥을 유지해 보려고 온갖 반민중적인 정책을 주사하여 우리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여 전쟁비용, 군사비도 줄이고 미국의 금융자본의 침략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과 경제침탈을 벗어난다면 그 돈으로 우리 민족은 참으로넉넉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돈을 우리 생활에 자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민중과 도시빈민들은 자녀교육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킬 수 있고 무주택 도시빈민은 누구나 주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병이 나면 우리 서민들은 무상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도시 빈민들이 각성만 한다면 오늘의 생존권 투쟁을 더욱 진전시키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통일의 방향으로 그 대쟁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기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우리 자손에게 행복한 생활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정권에 대해서 생존권 투쟁을 집요하게 전개함은 물론이고 그 투쟁의 성과를 거두어 광범한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여 민족 대단결로 나아가 남과 북, 해외가 연대하여 모든 민족 역량을 집결시킴으로써 우리는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 내고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 민족적 자주권을 쟁취 할 때만이 우리 도시빈민들이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이데올로기 싸움을 부추기고 그래서 북에는 강경 정책 남에는 경제침탈, 내정간섭을 자행함으로써 미제의 영구적인 이익을 보장하려는 기도를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해서 군사비 분담과 경제착취 사슬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길이 나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오늘 극우 파쇼세력들을 고립화시키고 광범위한 우리 민중이 연합하여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능히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 낼 수가 있다. 또한 4천만 민중이 하나되고 7천만 민족이 하나되는 민족 대 단결의 길에서 우리 도시빈민이 앞장선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도시빈민들의 한 맛힌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김대중 정권은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그 색깔이 다양한 정권이다. 첫째,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힘에 의해서 탄생된 개혁성향이 강한 정권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영호남 지역 감정에 토대하여 탄생된 전라도 지역 정권으로써의 편향을 벗어날 수가 없다.

박정희 정권 이후 계속된 영남지역 편향의 권력이 유리됨으로 인

하여 그동안 지역 감정의 피해자로써 한을 풀기 위한 호남 지방의 한 풀이 정권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선되자 마자 광주에서는 큰 축하 잔치가 벌어져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행사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세번째는 김대중 정권은 역시 미 제국주의의 마름 정권으로써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동안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족 경제의 자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이요, 정리해고요하면서 IMF 자금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개혁 성향을 실종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를 더욱 깊이 편입되어 다방면의 기업을 외세에 쌈값으로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네 번째로 통일지향성의 정권이라는 것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6. 15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그 결과로써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통일운동 선상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통일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권을 크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인해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하나는 민족통일문제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 개혁문제이다.

통일 지향적 부문에 있어서는 민족통일을 불과 공동정권으로써 보

조를 맞춰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민주화와 개혁부문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하지 못하고 도시빈민들의 생활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리 민중은 김대중 정권을 퇴진투쟁으로 물고 갈 수밖에 없다. 통일운동부문에서는 김대중 정권을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개혁상실의 부문에서는 더 이상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민중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관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당연히 김대중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양면성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이 통일 지향성으로 나아간다면 당연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중 생존권 부문에서 탄압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하고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일면 견인, 일면 타격이 현실적으로 우리 민중이 처한 전술적 요구이다. 그러나 앞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 본다면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반민중, 빙민주,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남북공동선언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선언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미제가 북에는 강경 정책을 쓰고 남에는 내정간섭을 하여 김대중 정권의 자주성이란 전혀 찾아 볼 수 없도록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오늘의 보수정권이 정치, 군

사,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얹매어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여 기본 생존권조차 박탈하고 그 탄압의 대가로 IMF 국제 자금의 이윤을 배불리게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정권으로서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대가로써 권력을 유지를 보장받는 마름 정권으로써의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말기 정권현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더욱 반 개혁, 민중탄압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우리 민중과 도시빈민의 대안은 하루속히 이 땅에서 보수 반통일, 반민중 권력을 분쇄하고 오직 민중권력을 창출해 내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번에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와 연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온 민중이 힘을 모아 민중 권리가 창출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빈민의 주적은 미 제국주의이다.

도시빈민은 계급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착취 억압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도시빈민의 운명은 자기를 못살게 구는 대상을 투쟁으로 물리치지 않고는 자기 운명을 오늘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오늘 우리 한반도의 민족 불란의 아픔과 미제의 전쟁책동과 경제침탈로 인한 우리 민중 특히 도시빈민들의 가난과 고통은 그 원인 제공자가 이 땅 만악의 근원 미 제국주의이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를 몰아 내지 않고서는 한시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IMF 국제 독점재벌로부터 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안겨 준 화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세기말부터 침략의 촉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1866년 미제는 우리 땅에 와서 셔먼호 사건을 일으켰고 1871년 신미양요를 일으켜 우리 민족을 학살하기 시작하였고 1882년에 조미수금 통상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어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05년에 와서는 소위 대프트-가스라 밀약을 맺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공모 결탁하였고 드디어 1945년 9월 8일 인천 앞 바다에 미 24군단이 침략군으로 상륙한 뒤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44년 여운형 선생께서 조직하신 건국동맹을 1945년 8월 15일 일제

가 패망하자 바로 전국준비위원회(전준)로 개칭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1945년 9월 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1000여명이 모여 결성한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최초의 근대 국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지만 미제가 들어 와서 이를 불법화하고 말았다. 그 후 이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조선 임시정부 건립의 약속을 초개같이 버리고 우리 민족을 좌우 대립으로 갈라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무효화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서 분단 단독선거를 우리 민족의 뜻에 반하여 강행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영구 분할하고 말았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자 미제는 6. 25 전쟁을 발발하여 500만이라는 우리 민족을 살상하고 국토를 잣더미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전쟁 고아와 상이자를 낳게 되었고 도시에는 집 없고 직업 없는 빈민을 양산하게 되었다. 반세기에 걸친 미제의 전쟁 소동과 경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사회적 현실은 빈민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갔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 빈민의 생활은 미제가 이 땅을 점령하여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지 우지 하는 한은 더욱더 그 생활이 비참하게 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족적 억압과 착취 그리고 계급적 착취가 이중, 삼중으로 우리 민중의 생활을 옥죄어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제국주의에 대한 피해는 일제로부터 시발하여 지금까지 1세기에 걸친 지난한 민족해방 투쟁과 통일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막스는 그가 19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필생의 역작으로서 자본론을 썼는

데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 사회 구성체 내에서 생산력이 더 이상 발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은 그 사회구성체로 절대로 다른 사회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막스는 그 당시 사회 현실에서 관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격한 자연사관에 입각한 유물사관을 확립하여 놓았다. 그후 레닌은 또한 “후진국의 노동해방은 선진국의 노동운동이 승리 할 때 비로소 후진국의 민족해방이 가능하다”는 노동운동의 유물 사관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후 후진국의 민중해방 고통은 막스와 레닌의 주장과는 관계 없이 선진국의 노동운동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민족 해방 운동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일제 시대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창당이 되었으나 레닌이 조직한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파벌 싸움이나 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인해서 코민테른의 해산 선언을 받는 수모를 받게 되었다.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 된 뒤에도 행세식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조직된 코민테른에 얹매어 재건 사업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민중의 힘을 발양하지 못한 나머지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은 바로 민족해방운동의 유물사관에서 오는 철학적 한계인 것이다.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1930년을 계기로 새로운 민족운동의 지도부의 출발로 인해 이 유물사관적인 운동의 한계를 넘어 서서 물질위주의 철학적 명제를 극복하고 사람 위주의 철학적 명제를 내세우게

되었다. 사람과 세계에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이 물질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사회의 주인은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민중의 힘을 발양하면 어떠한 제국주의도 물리칠 수 있고 인간의 자주성을 회복 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투쟁 속에서 현실화 시켜 냈으로써 오늘 우리 민족은 강한 민족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7천만 민족이 주인이 되어 오늘의 운명을 우리 민족 자신이 단결하여 투쟁해 나간다면 지구상의 그 어떠한 제국 주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숙원하는 통일을 이루하여 민족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민중, 특히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 민중이 강력하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간다면 우리의 통일을 앞당길 수가 있다.

이 길에서 이 땅의 그 어느 계층보다도 미제에 의한 피해의식이 강하고 한을 가지고 살아 나가는 도시빈민이야 말로 투쟁에 앞에서 싸워 나갈 때 오늘의 불행한 처지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우리 도시빈민은 우리 민족의 보람찬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함께 어깨 걸고 통일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미제는 우리 민족을 상대로 NMD, TMD요 하면서 이 땅을 무력으로 제압해 보려고 6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소비하여 4차까지 실험을 했으나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족해방투쟁에서 승

리는 무력의 우수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의 우위에서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 7천만 민족이 단결한다면 MD라는 그 어떤 무력도 제압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이루할 수가 있다.

빈민건강의 현실과 건강권 투쟁의 과제

김재구 _ 민중의료연합 빈민건강팀

■ 들어가며

IMF 3년을 마감한 현재도 노동자 민중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정권은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며 노동자민중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했다. 김대중정권은 자본의 위기타개를 위한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착취의 강화를 목적하며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김대중정권의 4대

개혁은 노동자에게는 은행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목표로 하는 금융자주회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금융장악을 합리화하는 금융개악, 자본 투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 소유구조 도입으로 요약되는 기업구조 개악,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와 이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공공부문 개악, 그리고 이러한 제반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비정규·임시직화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연봉제, 우리사주 같은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강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부문 구조개악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정권은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최저선 미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사태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정권은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전하며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만, 빈곤한 사람들은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1월 2일엔 영등포 쪽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쪽방거주자들의 대다수는 장애인·노인·일용직 노동자들로 근근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삶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노숙의 바로 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에 필요하지 않은 노

동력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배제에 의해 인간으로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지난 노동자대회와 앞으로의 총파업으로 예고되고 있고, 농민들은 부채탕감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철거에 맞서, 최촌마을, 봉천3동, 월곡동, 남가좌동, 인천 만월산 등등의 지역에서 철거민들의 죽음을 결의한 투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인천 동구의 노점상들에 대한 용역깡패와 전경들의 폭력 강제 철거에 맞선 투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곧바로 정권에 대한 반대와 정치권력의 정치적 위기로 나타났던 과거의 노동자·민중 투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조는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고, 롯데호텔 노조, 사회보험 노조, 금융노동자들의 파업은 의사들의 폐업과 함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며 사회적 파괴력을 감소시켰고 개별사업장과 빈민들의 투쟁은 고립된 채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노동자·민중들의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사수투쟁이 과편화, 고립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정세적 상황에서 우리는 “빈민건강”을 말하고자 한다.

민의련 활동에서 빈민건강을 중심으로 계획과 실천의 동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98년부터 벌여온 빈민운동단체(전철연, 전노련)와의 지속적인 연대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철거투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활동은 주로 진료를 통한 지지방문이었다. 연대과정에서 민중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지도 못했고, 준비 또한 치밀하지 않았다.

2000년 1월, “민중건강회의 2000” 빈민세션을 통해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작업을 진행하였고 분석을 통해 빈민의 건강문제를 논하고자 하였다. 애초에 민중건강회의의 성과를 이어 빈민운동 활동가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빈민운동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고민하는 민의련에서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투쟁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주체가 되어야 하는 빈민운동단체들과의 정기적인 논의공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종국에는 전빈련의 정책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그것이 위치지워졌으면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주체역량의 한계, 단체상황 등과 맞물려 답보 상태에 있다.

본격적으로 빈민건강팀의 세미나 토론토임을 가지게 된 것은 7월 경이다. 정책연구를 자임하면서도 스스로의 관점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민의련 내의 관심있는 동지들과 빈민건강팀을 구성

하고 생산적 복지, 빈민건강대책 관련 글, UNDP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직 명확하게 통일된 의견을 가진 것도, 돌파구를 발견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빈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지, 건강문제와 관계지우려 하는가하는 문제의식만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자본이 시혜의 논리로 ‘보호의 그물’을 드리워 놓은 소수의 극빈 층에 우리의 의식을 가두지 말고, 자본이 필연적으로 안겨주는 선물, 빈곤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하기에 빈민건강을 실천적으로 고민하면서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빈민건강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글을 전개하려 한다.

먼저, 주체인 빈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절대적·상대적 빈곤, 빈곤 선, 빈민의 이론적 정리를 진행하고, 빈민형성의 역사적 과정 특히 경선, 빈민의 이론적 정리를 진행하고, 빈민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속에서 향후 빈민의 제위기 이후 변화되는 빈민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속에서 향후 빈민의 모습과 성격을 예측하려 한다. 나아가 현 시기 제기되는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의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빈민운동과 빈민건강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후 빈민건강에 대한 접근전략과 실천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빈민건강이 민중운동과 민중건강권 쟁취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발전적인 의견과 충고 바란다.

■ 빈곤과 빈민에 대한 개념적 정리

빈곤의 개념은 명확하고 보편적인 정의에 이르기보다 빈곤문제 그 자체가 어느 한 측면에 국한시켜 파악할 수 없고, 그 단어 또한 매우 다양한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상대적 빈곤, 생리학적/사회학적 빈곤, 객관적/주관적 빈곤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되고 있다.

구태여 이를 정의하면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평균적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통용되고 있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상대적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을 위협받는 정도의 물질적 결핍상태, 즉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환경도 갖추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 빈곤은 타계층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한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을 토대로 한 빈곤선의 측정방법은 빈곤층의 범위를 정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개념에 의거하여)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엉겔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전물량방식 _ 영양학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육체적인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료품, 의류, 주거, 난방만을 포함시킨 기초생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최소가계지출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

반물량방식 _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지출비에 '3' 곱하는 방식

엥겔방식 _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엥겔지수를 표준화하고 식료품 구입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 엥겔지수를 초과하는 모든 가구를 빈곤가구로 간주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74, 19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8, 1994, 1999)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전물량방식과 반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바 있다. 생활보호법 제 5조 2항은 매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빈곤선 (1999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대도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농어촌	270,784	448,64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2〉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추정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4인가구 기준)

	기준연도(지역)	추정방식	최저생계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3(전국)	엥겔방식	21,739
	1978(대도시)		168,2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지역별)	전물량방식	348,597
	1994(지역별)		763,817
	1999(지역별)		
한국노동연구원	1998(도시)	반물량방식	1,437,366
한국노총	1999(도시)	전물량방식	2,457,256
민주노총	1999(도시)	전물량방식	2,775,661

민주노총의 경우 최저생계비라는 표현보다는 표준생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996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99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빈곤선의 측정방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소득이나 지출수준의 몇 %를 빈곤선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표3〉 주요기관 및 연구자들의 상대빈곤선 정의

주요기관 및 연구자	상대적 빈곤선
OECD	중위 가구 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가구소득의 1/2
V.Fuchs	중위가구소득의 50%
P.Townsend	빈곤층은 평균가구소득의 80%이하, 극빈층은 50%이하
Lee Rainwater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일본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의 68%

자료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1997.10

상대적 빈곤을 정하는 비경제적 기준·시간적/공간적 박탈, 문화 및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개는 평균 혹은 중위가구 소득 혹은 지출의 몇 %이하에 속한 가구를 빈곤가구로 설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선을 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99년 4인가구 근로자 평균소득을 가지고 계산) Townsend의 방법을 이용하면 빈곤층은 1,833,672원이며 극빈층은 1,146,045원이다. Rainwater의 방법을 이용하면 평균소득의 46%는 1,054,362원이며 58%는 1,329,412원, 평균 52%는 1,191,887원인 것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상기할 만한 것은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선에 따라 측정된 빈곤규모조차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표4〉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 (단위: 명, %)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자료 : 통계청(1999), 가구추계, pp. 23-25

빈곤가구의 규모는 96년 200만 가구에서 97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98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98년에는 240만가구, 99년에는 270만 가구로 추정되고, 빈민의 수는 96년 760만에서 차츰 늘어나 99년에는 1000만명을 약간 넘었다.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퇴치정책은 빈곤층을 배제시키거나 시혜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빈곤을 영속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에 관한 인프라가 안정적인 서유럽국가들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개념을 절충하여 수용하고 있지만 가용소득의 크기에 따른 정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즉, 빈곤의 문제를 빈곤이 재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며, 빈곤이 양산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빈곤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1998년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을 제외한 조사대상 130여 국가중 76개국이 인간빈곤(인간발전과 정반대되는 상태)을 중심개념으로 제시하면서 비소득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개념은 빈곤을 소득의 고지에 국한시키기보다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포괄하며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역량을 해방하고 이러한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수용하고 빈곤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빈곤선을 더 높여 보다 많은 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도록 하라든지, 멀 비참할 수 있는 수준들을 보장하자는 것은 빈민운동에 있어 실천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산되는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빈민운동의 주체발굴은 이론적으로 측정한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 '당신이 바로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이 사회의 최하층이오'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생산되는 구조적인 접점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업운동, 비정규직 투쟁이나 고용안정이라는 운동적 슬로건은 빈민운동의 다양한 접점들로 사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조차도 노동자, 농민, 빈민이라는 구분 속에서 극빈층을 빈민으로 사고했던 사고들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도시빈민의 역사적 형성, 특히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과정 (참여연대의 UNDP 보고서¹⁾ 인용, 정리)

빈민층이 형성되게 된 시점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해방 후 북한 주민의 월남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농촌의 영세소농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빈민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급격한 사회변동에서 비롯된 '보편적 빈곤의 시대'였다. 이후 60년대 산업화추진으로 이농이 급증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도

"우리가 검토했던 99년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UNDP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한다면, UNDP 보고서는 우선 남한의 빈곤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빈곤화 과정, 특성, 빈곤의 규모, 비공식 복지를 통한 빈곤의 완화, 정부의 대책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복지 수준과 빈곤 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복지병이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입장에 반박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빈민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조조정과 맞물린 빈곤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구조조정 이후 양산되는 극빈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일천하고 수많은 극빈층이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한 생산적 복지 구상을 반가운 것이고 전술적으로 적극 이용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천명해서 끝나지 않도록 보완하고 압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고 일면 지지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회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구상의 일부분이다.

시로 유입하게 되면서 도시빈민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결국 도시 제조업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이들은 영세상업이나 행상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에 종사하면서 이들은 빈곤층으로 편입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농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였는데 도시의 노동력 공급 양식이 바뀌어 가구 단위의 이농이 줄고 단신이농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농민의 연령대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주 가운데 농촌출신의 비율이 1970년대 초반 약 80%에 달했다가 1980년대 이후 약 60%수준으로 정체된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사양산업에 종사하거나 근대적 산업부문에 적응하기 어려운 미숙련 노동자들이나 저학력의 장년층 노동자들은 도시의 주변적인 노동시장에서 편입되어 갔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해 갔다. 더 이상 도시빈민은 '도시 속의 농민'이 아니며 도시 내에서 빈곤이 세대간 계승의 형태를 띠고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강력한 철거·재개발 정책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비닐하우스 등 적절치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취업의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일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도시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원을 아예 상실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삐감당하는 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층에서 빈곤층으로의 하강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한국의 빈민은 14.4%-18.8%로 추정되고 있으며 외환위기로 빈곤 인구는 높아졌으며 천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은 97년 14.0%에서 일년만에 무려 12.5% 포인트나 증가하여 98년에는 26.5%를 기록하고 있다. 98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이 2.8%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이하의 가구가 이토록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중하류층이 대량으로 봉괴되어 극빈층으로 전락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99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과 소득의 두 가지 기준에 맞으나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44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누적 절유율은 98년 빈곤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년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분배구조가 더 악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으로 빈곤의 구조적 재생산 메커니즘은 결코 해소되지 못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상대적 빈곤의 감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어서 과거의 상대적 고소득 및 저실업 상황이 낳은 절대적 빈곤의 감소 추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생산적 복지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는 표면상의 국가의 후퇴, 자본의 합리성 강화, 노동의 재규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구조조정의 결과는 우선 인력조정과 노동비용의 감축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 구조를 합리적으로 강화시켰고, 노동정치체제에서 국제경쟁의 우위 선점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결정 요소로 하여 노동배제현상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현존하는 문제는 IMF라는 이데올로기적 완충망이 해체되고 점차 증가하는 노동의 불만, 보상심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정책에 대한 노동의 자발적 동의 구조를 확보하고 노동을 재규율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본격적인 시도를 앞두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생산적 복지¹⁾는 자기 위치를 찾는다. 즉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동의구조의 확보를 첫 번째 사명으로 갖는다. 결국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노동의 유연화전략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대량 양성되는 실업자들에게는 완충망의 역할을 해준다.¹⁾

이데올로기적 의미 이상으로 생산적 복지가 갖는 효과는 극심한

착취와 고통을 ‘보장’하고 유연화된 시장에 풍부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과 복지를 연계하여 극도의 착취와 고통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만들고 그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받기 위해 불안정한 시장으로 노동력을 내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죽지는 않을 정도의 보장과 적게 주고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군의 형성, 그것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를 협소하게 이해하면 정부의 정책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 이상의 실천을 기획할 수 없다. 생산적 복지를 한국 사회에서 복지 제도의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복지를 연결하여 자본생산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때 대웅 또한 몇몇 정책적 차원에서의 협소한 대웅이 아닌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의 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 당시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빈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구나, 빈곤이 단순히 특정 나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의지가 있어도 빈곤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노동하고 있어도 빈곤할 수 있다는 점(working poor)을 인정하는 급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생계비 삽감에 따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지난 10월 18일 충남 천안의 장애인은 새 제도 시행으로 생계비

삭감에 좌절해 자살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화려한 입법취지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범으로 하는 의료보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생계와 건강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여기서 우리는 “서구의 ‘제3의 길’의 한국적 표현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론은 제3의 길 노선의 원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복지의 과일’이나, 비효율적인 복지확대를 도모하는 서구식의 ‘좌파 정치’의 부재로 인해 다른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김영삼 정권 시기와 그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군실도 없는데 군살빼기 정책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분별하게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민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2의 길 또는 비생산적 복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3의 길이나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를 가능한 한, 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경제위기의 도래로 어쩔수 없이 확대해야 했던 사회적 안전망을, 생산성의 이름 아래 최소치만 놔두고 거두어들이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남구현(2000)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3의 길’론과 ‘생산적 복지’론은 추상성의 수준이 다른 차원의 담론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0. 11,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 담론과 대안탐색, 모지환에서 인용)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급여의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행을 앞둔 8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쟁들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무더기로 탈락하는 등의 적용범위(coverage) 문제나 둘째, 지원액의 문제 셋째, 자활사업의 실질적인 실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제도의 설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바라보는 철학적,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첫째, 적용범위(coverage)의 문제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비해서 그 대상이 넓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65세 이하의 혼히 말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뚜껑을 열었을 때 신청자 194만 명중에서 45만 명이 탈락되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무더기가 탈락되는 현상이

“이러한 핵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이 법에 대해 이해는 여러가지 국면들 속에서 생성될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큰 맥락을 차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이다.

나타났다. 또한 65세 미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의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차상위계층¹⁾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4인 가족 기준으로 9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했으나 실질적으로 타법령 지원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엄격한 소득평가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빈곤층의 수급하게 되는 지원액은 턱없이 줄어들게 되었다. 천안에서 자살한 장애인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한 달에 21만원을 받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타법령 지원액(260,789원=의료, 교육, 주택)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기준의 문제로 인해 생계급여와 주택급여 명목의 6만 2천원만을 수급할 수 있었다. 즉, 엄격한 부양의무자 규정, 주택면적 및 자동차를 소득평가액에 포함함에 따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양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의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의 감소나 해결을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빈곤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120% 미만인 사람

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강조함을 의미하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따른 급여수준이 빈곤의 감소와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활의 문제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사업을 통해 앞서의 빈곤의 감소 또는 빈곤의 해결을 꾀하려고 한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대안이나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 생산성 있는 부분을 창출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해 그들이 말하는 '자활'을 돋고 빈곤의 해결을 꾀하기보다는 현재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회적 위험(risk)을 최소화하려는 것 이상 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모범으로 하는 의료보호법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선포'하면서 1978년 시행되었다. 의료보호 실행과정에서 높은 본인부담금, 의료비 체불에 따른 병원에서의 문전박대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의료보호의 모범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어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빈곤층의 건강권 달성을 소원해지고 있다.

의료보호의 문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 규

정에 따른 1종 2종 구분, 본인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의료보호에서 2종으로 구분되어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2종 의료보호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입원시 20%라 할지라도 MRI, 초음파와 같은 의료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의료비의 40~50%를 실질적으로 본인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보호법에 따라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본인부담금 1,000 원을 지불하였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시 1,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총 국가예산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종 2종의 구분과 본인부담금의 유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보자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는 빈민층과 실업자들이 게으르며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재의 빈곤층과 실업자들은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들이 스스로 최저 생계비를 조달하지 못한다 해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준으로 한정되어 빈곤층과 실업자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된다.

둘째, 예산상의 문제로서 의료비 체불문제이다. 국가 예산은 매년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왔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의료보호 체불문제로 이어졌으며 의료비 체불문제로 병원은 의료보호환자를 꺼려해 의료보호환자들은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 게다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이제 약국에서도 의료보호환자들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보호법에는 이러한 의료비 체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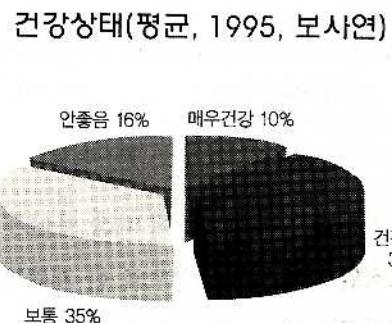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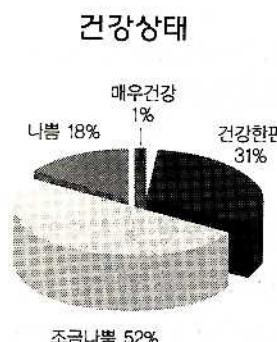
셋째, 의료보호의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의료보호 급여 범위가 건강보험에 준하고 있는데, 서비스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라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자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결국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어가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호의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단순히 의료보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 예산배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단순히 제도의 설계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장을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 빈민건강에 대한 접근전략과 실천방향

(1) 빈곤과 건강의 불평등 문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차별이 존재하며, 그 동안 조사된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나타나 있다. 1999년 도시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조사 결과와 9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조사 결과 중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노점상들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68%의 응답자들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에 보사연 결과에서는 15.8%의 응답자들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빈민의 건강수준과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를 보면, 95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조사결과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암의 2주간 유병률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경우 100명 중 4.95명인 반면에 251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명 중 0.48명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주간 유병률

가구소득수준	신생물	내분비장애	순환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50만원이하	4.95	19.41	90.56	173.9	253.42
51-100만원	2.94	10.72	30.61	121.76	90.97
101-150만원	1.64	7.39	23.99	116.33	70.33
151-200만원	1.21	6.04	20.29	105.58	63.06
201-250만원	1.84	8.58	29.43	98.71	71.74
251만원 이상	0.48	8.6	32	110.32	60.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 1996. (2주간 이환건수 / 전체 조사대상인구) *100

사망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를 연구한 조홍준의 결과에 의하면 사망률의 수준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월 525,000원 미만인 계층의 사망률이 27.8%인 반면에, 월 소득이 1,125,000원 이상인 계층의 사망률은 10.5%에 불과하였다.

표. 소득등급별 사망률

(인구 10,000명당)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남자	조사망률	24.9	12.3	14.0	16.9	31.9 19.9
	연령표준화 사망률	34.8	27.7	21.5	16.3	13.8 22.9
여자	조사망률	3.6	2.8	1.8	3.4	4.6 3.1
	연령표준화 사망률	7.5	3.3	2.1	2.0	1.5 3.3
계	조사망률	16.7	9.5	10.3	14.2	27.7 15.4
	연령표준화 사망률	27.8	20.3	16.3	12.5	10.5 15.4

자료) 조홍준,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참고) 1분위 : 월보수 525,000이하, 2분위: 525,000 - 675,000 3분위: 675,000 - 845,000
4분위 : 845,000 - 1,125,000 5분위: 1,125,000 이상

이러한 결과의 대부분이 빈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빈민이 당하는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사회 빈민들이 겪는 불평등의 수

준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불평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2) 빈민운동에서 건강권 투쟁의 필요성

1) 건강권 투쟁의 빈곤과 그 원인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모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빈민운동에서 건강권 투쟁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동안의 빈민운동이 노점상들과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권 투쟁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둘째, 건강권 투쟁을 빈민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상승시켜나가기 위한 조직적 흐름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생존권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건강의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건강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던 관행 속에서 건강권 투쟁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 우리 운동의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빈민운동에서 건강권 투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빈민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운동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빈민건강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운동의 과제로 상승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운동가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2) 건강을 위협받는 빈곤계층의 구조적 양산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빈곤층이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고용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양산되고 있는 도시빈민들은 경제적 능력의 부재와 이들이 감내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의 위협에 대하여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점차 심각해 질 이들의 건강 문제는 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현재 이들의 투쟁이 고용 보장을 위한 실업자 운동이나 정규직 쟁취와 같은 고용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건강권 투쟁의 요구가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오늘의 상황은 보건의료 운동이 개입할 운동적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이제 건강의 문제는 주요한 투쟁의 매개 고리의 하나이며, 적극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할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3) 빈민건강권 투쟁의 접근관점

빈민건강의 문제를 단순히 의료보호를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대로 시행함을 목표로 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민 운동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들 시민, 사회단체의 정책적 대응은 복지의 일정한 중대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의 성장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확대의 흐름을 차단할 수 없다. 오히려 안정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층의 불만이라는 정부와 자본의 부담

을 완충해주는 형태에 일조 할 수도 있다. 또한 노동과 복지의 연계라는 허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강제되고 있는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빈곤층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는 99년 빈민 1천 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반증하고 있다. 과거의 농촌에서의 유입이나 산업노동자의 고령화와 실업, 자영업자의 지위 하강 등으로 나타나던 빈민형 성의 양상이 외환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일부(?) 불안정노동자(일용·임시·계약직 노동자, 용역·파견·사내 하청 노동자, 하청·외청 노동자, 영세업체 노동자,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됨), 실업자, 노숙자, 노점상, 철거민 등 대다수 민중들이 도시빈곤층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은 과거의 전투적 빈민운동이 포괄하던 극빈 층을 넘어선 운동의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빈민운동뿐만 아니라, 실업운동, 비정규직 운동 등으로도 포괄되고 있지만, 이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부족하다. 삶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과 함께가는 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불안정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더불어 생활에서의 건강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현재의 지역운동의 흐름에 계급적방향으로 지역운동과 현장노동운동의 결합 등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주거권 등의 생존권차원에서 진행되는 철거민·노점상의 투쟁이 건강

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장되고, 더욱 불건강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실업자군의 건강권 문제의 부각은 투쟁의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 민중운동의 계급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 빈민건강 투쟁의 실천전략

빈민건강 투쟁이 빈민운동의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첫째, 건강수준의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이 초래하는 건강의 양극 단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이러한 폭로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빈민들이 건강의 문제를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요구로 상승시켜나갈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빈민건강 투쟁의 주체와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철연, 전노련과의 연대의 강화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양산되고 있는 새로운 빈곤 계층 운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건강을 매개로 한 결합을 통하여 건강권 투쟁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빈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절실한 요구와 분노에 기반한 운동에서 출발하여 사회변혁의 요구로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의료보호 투쟁의 한계를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총체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밀그림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1. 머리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말 현재 농협을 통해 조합원인 농민에게 대출된 금액은 39조 75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채농가 중 이미 파산했거나 경매처분으로 파산에 직면한 농가수(11,354농가)가 전 체농가의 1.73%인 23,930호에 달하며, 이는 1개 읍, 면당 15.3농가에 해당(1,425개 읍면 및 광역시의 69개 구, 일반시 72개를 1개 읍면으로 환산 총 1,566개 읍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39.4%에 이르며 농가 소득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농가는 4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보증채무 농가수가 전체 농가의 46.6%인 64만4012농가

에 이르며 전체 보증채무 추정액은 14조194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농협의 빚독촉에 농민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갔다.

농민들의 자살과 파산, 농촌공동체의 붕괴, 참다못한 농민들의 절 규와 항거에도 불구하고 이 땅 농정책임자들의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농가부채의 악순환의 고리인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계속되고 있다. 똑같은 WTO체제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가격보장, 소득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각국의 농업흐름과 비추어 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이 땅 농업·농민의 처지가 아닐 수 없다.

2. 미국의 농업지배와 수입개방압력 노골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남한 농업지배, IMF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하는 대가로 지원을 받으며 출범하여 태생적으로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 및 다국적 농업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계속 되는 한 농민들의 생존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미국의 남한 농업지배전략은 한반도 전쟁이후 농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거의 자급수준에 이른 남한농업과 자주자립적 경제도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무차별적인 잉여농산물(PL480)공급에서부터 시작

하여 70년대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군사정권에게 강요한 이중곡가제와 저곡가 정책, 80년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와 남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 강요, 90년대 UR협상의 희생물로 남한의 기초 농축산물 수입개방실시와 WTO체제하에 허용되는 농업보호 장치 방해는 마침내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농업금융지배와 농축산물의 무제한 수입개방, 그리고 가격지지정책과 보조금 지급의 포기로 나타나고 있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공세속에서 남한의 기초산업인 농업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농업자본은 세계 자본주의의 축적과잉과 이윤을 저하의 위기를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개방화' 공세로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은 정치군사적 전략의 수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농업, 특히 식량(축산물 포함)을 무기로 한 경제침탈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결탁된 다국적 농업기업의 생존전략과도 일치된다.

3. 신자유주의의 농업부문 관찰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권능에 의존하고 국가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

다.

70년대 말-80년대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 과정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화/개방화, 민영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공세는 개도국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방화/자유화의 이득은 선진제국의 초국적 (금융)자본과 개도국의 일부 대자본에게 귀속되고 국가간 격차와 일국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화'라는 구호속에 세계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한 세계질서 재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GATT)]과 뒤를 이어 등장한 세계무역기구(더블유티오, WTO)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WTO는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부의 증진, 번영, 복지개선을 가져다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대국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과거 5년간 일부선진국의 부를 집중시키는데 공헌한 반면 많은 나라에 외환위기의 고통을 안겨주고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세계속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

WTO는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시장개방'을 주창하며 세계경제와 식량수급을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완전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이다.

WTO체제 출범이후 개방 농정이 본격화되면서 식량 산업이며 생명·환경 산업인 농업분야에서도 '세계화, 규모화'라는 자본의 경쟁 논리로 포장된 구조개선이 엄청난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 신탁 체제에 종속된 지난 2년여 동안 대규모 수출 농업기업 중심의 미국식 구조조정이 가족농이 대다수인 한국농업에 예외없이 적용되어 농업생산체계와 농업금융에 큰 동요가 일어나고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농가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지난 70-80년대의 공업중심의 개발독재시기에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기치아래 추진된 저곡가정책과 탈농정책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농업을 축소지향으로 재편하는 방법을 통해 제국주의와 대자본의 초과 이윤 착취를 보장해주는 한국적 자본주의를 신식민지 예속 경제 체제로 편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5년 IMF와 IBRD의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당시 미국의 상무장관이 전두환 군사정권에게 한국산업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을 재편하는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후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발전대책이 추진되면서 UR협상이후 개방농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 노태우 정권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김영삼 정권의 신농정으로 대표되는 제1차 구조개선 사업은 바로 미국의 한국농업지배를 위한 농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이다.

특히 김대중정권의 농·축협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일 뿐이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협동조합개혁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농축협 중앙회 통합을 통한 농업금융구조조정으로 이후에 추진될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초 협동조합개혁이라는 구실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이다.

마침내 UR협상에서 한국이 가장 실패한 나라가 되어 WTO 체제 출범이후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채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농업기업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미국의 의도된 시기선택과 종속프로그램에 완전 굴복한 국난이 IMF 사태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미국의 일관된 남한 농업지배 전략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외환유동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농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김대중 정권은 무역자유화, 개방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으로 농축산물시장개방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업·농민의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농업의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를 통해 농축산물의 자유화/개방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WTO협상에서 농축산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세계시장의 통합에 맞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UR협상이후 나타났던 농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현재 WTO농업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개방자유화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팔아 싼 농산물을 사다먹자, 전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이득이다.”라는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적극적인 모습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pec(APEC)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더해 현재까지 4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김대중 정권은 농관련단체 및 학자들의 협정체결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정체결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첫째, 관세철폐시 우리 농업의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으로 추정되고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주권산업인 우리농업이 완전히 몰락하고 둘째, 공산품수출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칠레 시장은 결코 넓지 않아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될 것이라거나, 중남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셋째, 대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예측했듯이 무역적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히려マイ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넷째, ‘농업의 회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필두로 해서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화는 가속될 것이다.